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 시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준 배점범위 중 정량평가의 비중을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‘용역’을 ‘건설엔지니어링’으로, ‘용역비’를 ‘추정가격’으로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용역비가”를 “추정가격이”로, “용역은”을 “건설엔지니어링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용역”을 “건설엔지니어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용역비가”를 “추정가격이”로 한다.

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용역에”를 “건설엔지니어링에”로, “용역별”을 “건설엔지니어링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대상용역”을 “대상건설엔지니어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용역비가 10억원”을 “추정가격이 10억원”으로, “15억원 미만”을 “30억원 미만”으로, “용역비가 15억원”을 “추정가격이 15억원”으로, “25억원”을 “40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용역비가 15억원”을 “추정가격이 30억원”으로, “용역비가 25억원”을 “추정가격이 40억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“용역비가”를 각각 “추정가격이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가목의 배점범위란 중 “70”을 “8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1)의 배점범위란 중 “15”를 “10”으로 하며, 같은 목 2)의 배점범위란 중 “15”를 “1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(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) ① 발주청(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)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.	제28조(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용역비가</u>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, 기본설계, 실시설계, 건설사업관리(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<u>용역은</u>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	1. <u>추정가격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설엔지니어링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정할 것

가. 기본계획, 기본설계 또는
실시설계: 별표 2 제1호에
따라 평가(영 제52조제1항
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
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
후에 평가한다)

나. (생략)

2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
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
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
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
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
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
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
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
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
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

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
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
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
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
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
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
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

가. -----

----- 건설엔지
니어링-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추정가격이 -----

② -----

----- 건설엔지니어링에 ---

----- 건설엔지니어링별---

선정할 수 있다.

1. 대상용역

가. ~ 다. (생략)

2.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

가.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: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를 평가할 것

나.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: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

다.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: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

-----.

1. 대상건설엔지니어링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추정가격이 10억원 ----- 30
억원 미만-- 추정가격이 15억원 -- 40억원 -----

나. 추정가격이 30억원 -----

추정가격이 40억원 -----

다. 추정가격이 -----

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. 다만,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(이하 “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”라 한다)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. <u>용역비가</u>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: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· 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라. <u>추정가격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	--